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8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신혜, 장우윤, 유 용,
김용석(서초), 조상호, 김혜련,
김용석(도봉), 이병해, 성중기,
최영수, 김구현, 김영한,
김진철, 최호정, 신건택,
맹진영, 유광상, 이윤희,
전철수, 이정훈, 김인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으며, 실제로 북미나 유럽국가에서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음. 이는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등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바, 그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구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2)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u></p>
<p>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p>